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준희 의원 (대표)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278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16년 6월 20일

발 의 자 : 박준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우미경, 남재경, 김미경, 남창진,
강구덕, 이승로, 유동균, 오경환,
김인제, 김희걸, 김기대, 김정태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무리한 강제퇴거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
- 또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청산자 등에 대한 협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합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 및 법원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
- 현재 시에서는 행정지침으로 ‘사전협의체’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, 근거 법령이 미흡하여 사전협의를 강제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
-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조합원, 세입자 등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등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에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골자

-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42조의5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2조의5(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제출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(이주 거부에 대한 협의대책을 포함한다) 및 영 제41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철거계획서에 대한 이행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조합,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간 이견이 있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,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협의체는 분쟁당사자,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2인 이상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-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에서 5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 제77조의3, 이 조례 제42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(변경인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42조의5(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제출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(이주 거부에 대한 협의대책을 포함한다) 및 영 제41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철거계획서에 대한 이행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조합,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간 이견이 있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,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협의체는 분쟁당사자,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2인 이상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에서 5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 제77조의3, 이 조례 제42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</p> |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제42조의5를 신설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전단계로 사전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려는 것임
 -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의2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77조의3 제5항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비용의 부담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- 사전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사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의무가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어 이에 따른 서울시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회 박준희 의원